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55호
2. 발 의 자 : 권순선 의원 외 13명
3. 발의일자 : 2018. 10. 12.
4. 회부일자 : 2018. 10. 29.

II . 제안이유

-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과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III .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2. 교육감의 학교 홈페이지 지원에 대한 책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3. 학교장의 홈페이지 운영, 정보관리, 게시물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

4. 교육감의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지원, 매뉴얼의 작성·배포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안건 참고).
3. 기 타

입법예고(2018. 11. 1.~ 11. 8):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8년 10월 12일 권순선 의원 외 13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55호로 발의되어 2018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학교 홈페이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여 교육활동의 투명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학교 홈페이지 운영 현황과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의 각급 학교별 홈페이지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교수학습정보부, 이하 '연구원'이라 함)의 웹호스팅¹⁾ 운영 지원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표1][웹호스팅 운영 지원 학교 현황]

전체 학교수 (유치원 제외 학교수)	웹호스팅 운영 지원 학교수 ²⁾
2,238 (1,362)	1,296

1) 웹호스팅이란?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버 장비, 인터넷 회선 그리고 서버를 1년 365일 가동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춘 전산실과 서버를 관리할 엔지니어가 필요함. 인터넷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려면 인터넷 공간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올려두어야만 함. 자신의 컴퓨터에만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므로 홈페이지를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올려놓고 홈페이지를 확인하려면 그 홈페이지와 연결될 수 있는 주소가 있어야 하고 이 홈페이지 주소를 도메인이라고 함. 그리고 이러한 홈페이지를 올리는 웹상의 공간인 웹서버라는 곳에 올리게 됨. 따라서 웹호스팅은 웹(www) 공간을 임대(hosting)하는 것으로 서버컴퓨터의 일정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는 서비스이며, 이용자는 값비싼 장비와 인력을 들이지 않고도 저렴한 가격에 독자적인 서버컴퓨터를 가진 것과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도메인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빠른 속도에 다양한 웹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서버컴퓨터 운영비는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2) 연구원에서는 유치원 홈페이지에 대해서 별도의 웹호스팅을 지원하지 않음.

- 이와 같은 홈페이지 구축방식은 연구원에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버를 통해 각급 학교별로 필요한 응용소프트웨어와 빌더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단위학교에 서버를 두고 단위학교가 직접 구축·운영하는 방식보다 보안·예산관리 측면에서 학교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표2][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운영 지원 예산 집행 현황](2018.10.10. 기준)

(단위: 천원)

사업명	2018년도		2017년도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원인행위액 (D=B/A)	지출액 (E=C/A)
학교홈페이지 구축운영	542,400	542,400	666,640	492,051	303,396	90.7	55.9
119학교정보지원단	161,776	161,776	0	113,624	113,425	70.2	70.1
계	704,176	704,176	666,640	605,675	416,821	86.0	59.2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서 웹호스팅 서버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 전산 장비 교체 등으로 2018년 보다 14억 5천 8백만원이 증가한 22억 9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홈페이지의 웹호스팅 운영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3][2019년도 정보통신운영 예산안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2,293,868	835,474	좌동	1,458,394	좌동
서버실 및 전산장비 운영	196,073	26,155	좌동	169,918	좌동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759,705	759,319	좌동	386	좌동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	1,338,090	50,000	좌동	1,288,090	좌동

-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이러한 행정적, 재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등 서울시민이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학교 홈페이지마다 게시된 정보의 유형, 공개범위와 정도 등에 일관성이 없고 정보접근성에 일정한 제약이 있는 등 학교 홈페이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이 학교 홈페이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① 관리주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② 학부모 등 이용자의 정보접근성과 편의성을 증대하려는 것은 교육활동의 투명성 확보와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 조문별 검토

- 동 조례안은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를 비롯하여 안 제4조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안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그리고 안 제7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중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학교 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인 학교장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이외에 교육과정, 학교예산 등 교육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는 경우 등 학교 홈페이지의 구축·운영 목적에 배치되는 게시물을 관리하도록 하여 학교 홈페이지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였는바, 학교 홈페이지 관리 측면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의견에 대한 검토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에서는 안 제4조제2항이 학교장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학교급별, 공·사립별 특수성이 존재하는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제2항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하여’로 규정된 사항을 학교 사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줄 것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및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조회해 줄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1273, 2018.11.12.).

그러나 현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³⁾ 따르면 교육관련기관인 학교가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의 사항은 공개가 원칙이라는 점,

또한 동 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 제한된 정보를 제외’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정보공개 원칙) ①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그리고 법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 등 이외에 각급 학교별로 정보공개가 제한되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이고 그에 따른 학교 사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4. "교육관련기관"이란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4조、「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6.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 원칙) ①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